

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(농의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) 제1항 제4호중 '설치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'를  
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(분양·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'로 하고, 제2항  
중 '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'을 '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 
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·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  
이외의 용도로 분양·임대한 경우에는'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